

## 서울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 모집공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「서울서대문지역자활센터」 운영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1. 3. 2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# 1. 운영시설 현황

- 가. 시설명 : 서울서대문지역자활센터
- 나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86-77(연희동)
- 다. 현 종사자수 : 11명(센터장 포함)

### 2. 운영사업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자활근로사업
- 나. 보건복지부 「자활사업 안내」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

### 3. 운영방식 :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

### 4. 신청자격

- 가.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

#### 【신청제외 대상】

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 위반으로 법인(단체)의 대표 또는 등기이사가 처벌(징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)을 받은 법인(단체)
-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(횡령, 법인명의 대·차용, 인권착취 등)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, 관련사항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법인(단체)
- 법인(단체)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(단체)

## 5. 운영조건

- 가. 종사자 고용 승계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 승계
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

## 6.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

- 가. 공고기간 : 2021. 3. 2.(화) ~ 3. 26.(금)
- 나. 접수기간 : 2021. 3. 2.(화) ~ 3. 26.(금)
-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)
- 라. 접수장소 :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(2층)  
※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며(09:00~18:00) 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

## 7. 선정방법 : 서류 및 면접심사(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름)

- 가. 「서울서대문지역자활센터 변경지정 운영주체 선정계획」의 심사기준에 따름
- 나.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법인(단체)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
- 다. 신청법인(단체)가 없거나 1개 단독 신청할 경우 재공고 실시(5일 이상)하고, 재공고 결과 1개 법인(단체) 신청시 심사결과 해당 법인이 70점 이상 받으면 선정

## 8. 심사발표

- 가. 심사일시 : 별도 안내
- 나. 선정결과 :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게시 및 개별통보

## 9. 제출서류 : 제출서류를 1권으로 편철하여 원본 1부, 사본 12부 제출

- 가.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(서식1)
- 나.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허가증, 법인정관 사본 각1부  
(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 등록증, 단체회칙 또는 규약 사본 각1부)

다.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각1부  
(이사회가 없는 단체의 경우 총회 소집통지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각1부)

라.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(서식2)

① 신청법인(단체) 일반현황 및 사업현황

② 서울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내정자 이력사항(서식2-1, 자격증사본, 경력증명서 포함)

※ 센터장(내정자) 자격요건 : 2020 자활사업안내 「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」 적용

직 급	자격기준
1급	1.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지닌 자 2. 8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10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
2급	1.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. 6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

※ 사회복지사업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(아동, 노인, 장애인복지사업 등)

※ 해당업무 관련 자격 : 직업상담사, 경영지도사,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, 전산세무, 전산회계 등 자활 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

③ 사업계획서(※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
- ▶ 신청기관 관련사항 : 고유목적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, 운영 책임자 및 실무수행인력의 경력,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, 지역사회 공공·민간기관과의 연계 관련 실적
- ▶ 자활센터 운영계획 : 예정 사업내용, 인력운용계획, 자활센터 사업의 시행·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,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계획
- ▶ 사업별 세부계획 : 사업실시 배경(지역사회 조사결과 등), 사업내용, 사업별 예상 매출액 및 수익금과 자활기업 발전가능성에 대한 진단, 지역자활센터의 역할,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, 기대효과 등
- ▶ 예산안(세부사업별 예산포함) :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·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
- ▶ 기타 자료(위 내용의 별첨, 별지 자료)

마. 면접심사 발표자료(PPT/ 10분 이내/ 담당자 이메일 kj6522@sdm.go.kr 제출)

바. 서약서(서식3)

사.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또는 동의서(서식4)

(※제출대상: 센터장 내정자, 법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, 임원 등)

## 10. 제출방법 : 제출서류를 1권으로 편철하여 원본 1부, 사본 12부 제출

- 편철순서 : 지정신청서, 법인관련 자료, 심사의뢰서 순으로(제출서류 가~라) A4용지로 편철하고, 각 장 모두에 페이지기재, 목차에 따라 구분 견출지 부착
- 제본책자 파일, 면접심사 발표자료(제출서류 마) : 이메일(kj6522@sdm.go.kr) 제출
- 서약서 및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또는 동의서(제출서류 바~사) : 원본 별도 제출

## 11. 기타사항

- 가.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
- 나. 제출된 서류는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
- 다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
- 라. 신청법인(단체)은 관계규정 및 신청 자격조건, 현지역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공고사항 미숙지,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법인(단체)의 책임임
- 마. 신청법인(단체)은 심의당일(추후통보)에 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지역 자활센터 운영계획 등 설명(10분 이내)
- 바. 서대문구 자체심사로 선정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결정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가능
- 사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(☎02-330-1607)로 문의 바람